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名譽回復및禮遇등에관한法律案

| | |
|----------|--|
| 議案 番號 | |
|----------|--|

發議年月日 : 1998. 12. .
發議者 : 柳 宣 浩 議員
外 人

提案理由

다정형의
(왕내부
반의 몇몇
국가인들있지.)

1960년 4월 19日 이후 1998年 2月 24日까지의 民主化運動 過程에서 희생된 者와 그 遺族의 名譽回復 및 國家有功者와 같은 수준의 報償 등을 위하여 이 法을 提案하는 것임.

主要骨子

- 가. 이 法에 의한 適用對象을 1960年 4月 19日 이후 1998年 2月 24日까지의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으로 함(案 第1條)
- 나. 遺族의 범위 및 補償金 지급 등 禮遇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準用하도록 함(案 第3條 및 第16條).
- 다.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에 대한 名譽回復과 報償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名譽回復및報償審議委員會를 두되, 委員會의 委員은 9人으로 하고 國會議長 및 大法院長이 각각 3人씩 추천하여 國務總理가 任命하도록

함(案 第8條 및 第9條).

라. 民主化運動을 이유로 한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하여는 特別再審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함(案 第11條).

마. 要視察人名簿의 작성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함(案 第12條).

바. 政府는 民主化運動精神을 繼承하기 위하여 記念事業을 추진하도록 하고, 委員會의 審議·議決에 의하여 追慕團體 등에 대하여 事業費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案 第14條 및 第15條).

사) 民主化運動功績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證據資料에 의하여
증거 자료
확인된 者 등을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함(案 第21條).
적용 대상

參考事項

이 法律案은 이 法律案과 함께 國會에 제출되는 國家人權委員會法案의 일부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同 法律案이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修正議決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이 法律案의 내용을 調整하여야 할 것임.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名譽回復및禮遇등에관한法律案

第1條(目的) 이 法은 1960年 4月 19日 이후 1998年 2月 24日까지 民主化運動에 貢獻하거나 희생된 者와 그 遺族에 대한 名譽回復 및 報償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民主主義의 발전과 民族의 統一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民主化運動”이라 함은 國家의 權威主義的 統治 또는 政治權力의 基本權 制約에 抗拒하다가 부당한 彈壓을 받거나 犧牲됨으로써 憲法上 國民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權利를 回復시키거나 현저히 伸張시킨 것으로 評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라 함은 다음 各目的의 1에 해당하는 者중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名譽回復및報償審議委員會에서 이 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決定된 者를 말한다.

가.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한 者

나.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痕을 입은 者로서 그 傷痕程度가 國家報勳處長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傷痕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礙를 입은 것으로 判定된 者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第6條(報償을 받을 權利의 發生時期)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第7條(反民族民主行爲 禁止義務)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民族의 自主的 獨立과 統一 및 民主主義 發展을 손상하는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名譽回復및報償審議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에 대한 名譽回復과 報償등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名譽回復및報償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 및 그 遺族 또는 家族의 決定에 관한 사항
2.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에 대한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3.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追慕團體에 대한 財政支援에 관한 사항
4. 民族民主運動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여부의 判定 및 告發에 관한 사항
5. 이 法에서 정한 委員會의 議決事項
6. 기타 報償등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9條(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의

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식과 經驗^{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대통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국무총리}가 任命^{임명}한다. (이 경우 委員중 法官^{법관} 또는 辯護士^{변호사}의 資格^{자격}이 있는 者가 過半數^{다반수}이상이어야 한다.)

②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호선}하고, 委員중 3人是 國會議長^{국회의장}이 추천한 者를, 3人是 大法院長^{대법원장}이 추천한 者를 각각 任命^{임명}한다.

③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임기}는 2年으로 하되, 連任^{연임}할 수 있다.

④ 委員會의 組織^{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대통령}令으로 정한다.

第10條(事實調查 및 協助義務) ① 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關聯者^{관련자}로부터 證言·陳述^{증언·진술}을 聽取^{청취}할 수 있고 檢證^{검증} 또는 필요한 資料^{자료}를 調查^{조사}하거나 關係 行政機關^{관계 기관} 기타 團體^{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關係 行政機關^{관계 기관} 기타 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條(特別再審) ① 民主化運動을 이유로 한 有罪의 確定判決^{확정판결}(다른 犯罪^{범죄}와 競合된 有罪의 確定判決을 포함한다)을 宣告^{선고}받은 民主化運動 關聯有功者^{관련有功者}는 刑事訴訟法 第420條 및 軍事法院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再審^{재심}을 請求^{청구}할 수 있다.

②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 다만, 軍刑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者에 대한 原判決의 法院이 軍法會議 또는 軍事法院 일 때에는 그 審級에 따라 住所地의 法院이 管轄한다.

③再審의 管轄法院은 第1項의 再審請求人이 赦免을 받았거나 刑이 失效된 경우에 刑事訴訟法 第326條 내지 第328條 및 軍事法院法 第381條 내지 第3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終局的 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再審에 관한 節次는 同再審의 性格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訴訟法과 軍事法院法의 해당 條項을 적용한다.

第12條(불이익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民主化運動을 이유로 他人에 대하여 正當한 이유없이 要視察人名簿의 작성, 旅券發給節次에 있어서의 例外的取扱規定의 작성등 差別待遇(이하 “불이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불이익행위여부의 判定등) ①民主化運動을 이유로 불이익행위를 당한 者는 書面으로 委員會에 불이익행위여부의 判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불이익행위여부의 判定申請에 대하여 審議한 결과 불이익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搜查機關에 이를 告發하여야 한다.

第14條(記念事業) 政府는 民主化運動精神을 繼承하는 記念事業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15條(追慕團體등에 대한 財政支援등) ①政府는 委員會의 審議·議決에 의하여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를 追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 法人 또는 團體에 대하여 事業費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法人 또는 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에 事業費 등의 지원을 申請하여야 한다.

第16條(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의 準用)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에 대한 禮遇를 함에 있어서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2章 내지 第7章(第69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準用하되, 이 法 第2條第2號가目·다目 및 라目に 해당하는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는 “戰歿軍警”의 예에 따라, 同條同號나目に 해당하는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는 “戰傷軍警”의 예에 따른다.

第17條(報償金등의 還收) ①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報償金·學資金(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除받은 入學金, 授業料, 기타 學費를 포함한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報償을 받은 경우
2. 報償을 받은 후 그 報償을 받게된 사유가 遡及하여 消滅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하는 경우에 報償金등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

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③國家報勳處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金등을 還收 또는 徵收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者가 行方不明이거나 財産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還收 또는 徵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

第18條(返還義務의 免除) 國家報勳處長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은 者가 第17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報償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第1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報償金등은 이를 還收하지 아니하고 免除할 수 있다.

第19條(時效) 報償金을 받을 權利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20條(報償의 停止) ①國家報勳處長은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 損傷行爲 또는 反民族民主行爲를 한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3年の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報償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國家報勳處長은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執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報償金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21條(이 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排除) ①國家報勳處長은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이 받을 수 있는 모든 禮遇를 하지 아니한다.

1. 國家保安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2.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項에 規定된 罪로 有罪判決을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3. 民主化運動功績에 重大한 欠缺이 있는 것으로 證據資料에 의하여 확인된 者

4.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5.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 또는 反民族民主行爲를 한 者

②國家報勳處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杼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법의 適用對象者로 결정하여 報償을 行할 수 있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 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の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

③國家報勳處長은 第1項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를 이 法の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の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 다시 이 法の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國家報勳處長은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の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 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22條(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支援團體組織등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조직하거나 團體的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떠한 團體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團體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 또는 그 稱號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3條(權限의 위임, 委託) ①이 법에 의한 國家報勳處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屬機關에 위임할 수 있다.

②國家報勳處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報償金등의 지급에 관한 事務를 遞信官署 또는 金融機關 등에 委託할 수 있다.

第24條(다른 法律에 의한 報償등과의 관계 등) 이 법은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 法律 또는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등 다른 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條(罰則)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報償을 받거나 報償을 받게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③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10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6條(過怠料) ①정당한 사유없이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허위로 申告를 한 者 또는 同法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陳述을 한 者 또는 書類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民主化運動關聯有功者의 團體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第27條(過怠料의 賦課·徵收)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는 國家有功者等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8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인권 자료실 | | |
|--------|-------|----|
|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 |
| | B12-5 | 58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제목 : 1999년을 맞이하는 유가협과 추모연대의 입장

시행일 : 1999년 1월 4일

담당자 : 김학철(016-257-3180)

577-0601~2 2321 우편 222222 23 2522 (122222)
 016-256-3427 1222
 211-9435 2322 232222

4/4
 9월 APT
 202222
 212222 5222
 222 016 322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기자회견

- 1999년을 맞이하는 유가협과 추모연대의 입장 -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 일시 : 1999년 1월 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구 장기신용은행) 천막농성장

1. 나라와 겨레의 밝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회장 배은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혈육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해 88년 135일동안 농성을 하여 국회 5공특위에서 논의토록 하였으나 3당 합당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도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회장 이창복)는 쉽 없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여 지난 14대 국회 때에는 1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정기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4월부터 대국민캠페인을 서울역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구 장기신용은행 앞)에 천막을 치고 70줄의 노인들이 노구를 이끌고 정치권 전반의 각성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63일 째 철야 농성중에 있습니다.

3.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대통령께서도 청와대로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장단을 초청하여 정기국회에서의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정기국회도 끝나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법 제정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4. 이에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1999년을 맞이하여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아무쪼록 귀 언론사에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오며 1999년에도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 기자회견문을 별첨합니다.

- 이상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직인생략)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이창복(직인생략)

기자회견문

- 1999년을 맞이하는 유가협과 추모연대의 입장 -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1999년 기묘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한 해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의 회원들에게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다. 4월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처음 시작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은 한 여름의 피약별 아래에서도, 거센 폭우를 맞아가면서도 계속 되었다. 그 힘든 나날들을 보내면서도 수 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따뜻한 격려와 동참에 힘을 얻곤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마지막 힘을 모아 지난 11월 4일부터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을 눈보라를 맞아가며 63일째, 해를 넘겨가며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제 여생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고통스럽던 지난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전에 단 한 순간이라도 죽어간 혈육들이 범법자가 아니라,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을 하였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남은 소원이다.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에서 상정한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과예우등에관한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뱅뱅 돌고만 있을 뿐 법안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사항 외에는 국가인권기구 위상 논의로 인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정기국회도 끝났고 임시국회 또한 법안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가고 있으나 여야는 당쟁만을 일삼고 있을 뿐이다.

다가오는 21세기, 그리고 새천년을 화합과 통일, 번영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20세기의 한과 양금들을 그대로 지고 갈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올해는 나라와 겨레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들의 진상 규명을 이루어내어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내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유가협 회원들처럼 한과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이 땅에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이며, 민족의 저력을 한데 모아 새 천년을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원들은 1999년 기묘년을 맞이한 지금, 다시한번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과예우등에관한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 정치권 각성을 촉구하며 투쟁해 나설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산적한 현안 법안들을 불모로하여 당쟁만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은 각성하고 국회를 즉시 정상화하여 법안들을 심의 통과시켜라.

하나,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지 말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999. 1. 5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인권 자료실 | | |
|--------|------|------|
|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번호 |
| | B125 | 59 |

민족민주열사범추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 02-921-4090 Fax. 02-921-4094 ID nadrk(천) 전국연합(나우,유니텔)

문서번호 :981214

수신 : 열사범추위 소속 단체 및 각 단체
발신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모위원회
일시 : 1998년 12월 14일
제목 : 열사범추위 대표사회의 소집공고

1.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귀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1월 4일 유가협 어머니, 아버지께서 앞에서 천막을 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40일 가까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 또한, 매일 같이 찬바람을 맞으며 국회 앞에서, 각 당사에서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이제 정기국회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 법 제정을 이루어 내야 하셨습니다.
5. 이에 열사범추위 대표사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향후대책에 관해 논의하고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일시 : 1998년 12월 17일 오후 4시

장소 :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앞 도로 유가협 천막농성장(761-5926)

안건 : 1. 특별법 제정 진행경과 보고와 향후대책

2. 빈조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 신설에 대하여

(안건에 대한 대략적 내용은 별첨에 있습니다.)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과/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범/국/민/추/모/위/원/회

(별첨)

안건 1 - 특별법 제정 진행 경과 보고와 향후 대책

유가협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월부터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악법 철폐, 폭압기구 해체를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33개 단체가 모여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열사범추위, 상임대표 이창복, 김상근, 김현, 청하, 문정현, 이해동)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열사범추위 가입 단체들의 소속감 부족으로 몇 개 단위를 제외하고는 회의 참 조하였고 명예회복, 진상규명의 노력도 부족하여 사실상 유가협과 추모단체연대회의에 사업이 국한되었습니다.

유가협과 연대회의는 11월 4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40일 가까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찬바람을 맞으면서 국회 앞에서, 각 당사에서 법 제정 촉구 집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 법 제정을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안건 2 - 민족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 건설에 대하여

열사범추위는 출범할 때부터 범국민추모사업회 건설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설정하고 범추사 건설 준비 조직으로 자기 위상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이번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법안에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여부의 판정 및 고발에 관한 사항
- 5)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결정사항
- 6) 기타 보상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상으로 볼 때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을 우선하여 민주인사로 추천 임명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 모두가 우리 운동의 정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추모단체연대회의와 유가협에 의해 집계된 열사·희생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추모사업회를 하루 속히 건설하여 자체 내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결정된 명단을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기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5·18열사들에 대한 기념 사업 수준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정 될 대통령령에 열사 묘역을 한데 모아 성역화하는 문제나 국가기념일 제정, 열사의 거리, 민주화의 진당, 기념탑 건립, 교과시에 수록 등 기념사업의 내용의 반영과 이 사업의 주체로서 범국민추모사업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2) 이 법률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제반 조사

3) 민주회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시고 있기에 범국민추모사업회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 100일 맞이하며**

독재정권에 맞서 하나뿐인 복습마저도 기꺼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제단에 바쳤던 우리의 현육들, 조국을 사랑하였다는 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살로 위장된 채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의 현육들. 언제나 가슴속에 안은 채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한 죽음의 신체를 밝히기 위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간의 투쟁의 삶.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의 기쁨은 우리 투쟁의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다가왔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을 감할 길이 없다.

현육들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살려내고 각종복합기구에 의해 죽임을 당한 현육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기위한 우리의 10여년간의 싸움은 작년 11월 4일 국회앞 농성으로 이어졌었으며 그 농성이 오늘로서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100일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은 특별법 제정의 난관을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없음을 안다.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만이 이 결과를 또한 우리의 기쁨이 낼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국회앞 농성 100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후의 특별법 제정 투쟁은 더욱 완강하게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역사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현육들의 숭고한 신념을 더욱 정당하게 하고 현육들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유가족은 진실로 명예회복 진상규명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99년 2월 11일 국회앞 농성 100일을 맞이하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일동

명예회복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간보고대회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설명회**

일시 : 1999년 2월 2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강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모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 가나다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간보고

1. 진행 과정

- 88년 10월 17일 89년 2월 27일까지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독교회관에서 135일간 농성 전개
- 94년 11월 4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문사 진상재조사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서 제출
- 97년 3월 6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회의” 개최
- 97년 6월 5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개최
- 97년 9월 1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3차 학술회의” 개최
- 98년 5월 22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1차 학술회의” 개최
- 98년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1단계로 서울역 광장을 중심으로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캠페인 전개
- 98년 5월 말 이전까지의 학술회의 결과들을 모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법안 작성 의뢰. 민변에서 윤기원, 정태상, 이상훈 변호사로 소위원회를 구성
- 98년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2단계로 매주 금요일을 ‘열사 희생자의 날’로 정하고 서울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기부, 기무사, 국방부, 경찰청 보안수사대 등에 항의방문 투쟁.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제주로 캠페인 확산
- 98년 8월 3일 전국연합 등 33개 단체와 국회의원 이길재, 이미경 등 65명이 가입하여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약칭 열사범추위 상임대표 김상근, 김현, 문정현, 이창복, 이해동, 청화) 결성
- 98년 9월 1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를 개최. 이 회의에서 민변의 이상훈 변호사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법률안”을 발표
- 98년 9월 14일 열사범추위 주최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 호칭구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 98년 9월 15일 대국민캠페인 서명자 1차 분 52898명과 이길재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하여 여야 의원 58명이 참여하여 국회에 법률 제정 청원
- 98년 10월 20일 청와대에서 유가협 대표들과 열사범추위 대표들이 대통령과 회동하여 법 제정 약속 받음

- 98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각 당사 앞에서의 촉구집회, 국회 앞 피켓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98년 12월 11일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 등 106인이 소개의원으로써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및예우 등에 관한법률안” 국회 제출
- 98년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계류 됨
- 98년 12월 28일 제199회국회(임사회) 법사위에서 심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니라 문제 제기로 법안심의제1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 98년 12월 29일 법안심의 제1소위에서 법안을 유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넘기기로 함.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가 국회 529호실 사태로 인하여 열리지 못하고 소위에 계류 상태로 199회 국회 임시회 회기 종료됨
- 99년 2월 5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열려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및예우 등에 관한법률안”을 정무위로 넘김
- 99년 2월 24일 현재 제201회국회(임사회) 정무위원회에서 명예회복 법안 다루고 있음.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국민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향후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진상규명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반영하되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이 국가기구가 아닌 법무부 안처럼 위상이 정해져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이 정하여 졌음

2. 법안의 주요 골자

1) 명예회복 법안

● 민변에서 만든 시안

- ① 법안 명 :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법률안
- ② 적용시기 :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로 하고 종기는 제한하지 않음
- ③ 민족민주운동의 정의 : 이 법에서 “민족민주운동”이란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등에서 민족의 자주적 독립과 통일,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국민회의 당안과 동일)

● 국민회의 당안 (현재 상의중인 법안)

- ① 법안 명 :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등에관한 법률안
- ② 적용시기 : 1969년 8월 7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안 제1조)
- ③ 민주화운동의 정의 :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국민의 기본권 제약으로 탄압받거나 이에 항거하여 헌법상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현저히 신장시킨 경우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항)
- ④ 적용 대상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안 제2조 제2항)

⑤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안 제7조)

- (1)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3)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여부의 판정 및 고발에 관한 사항
- (5)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결정사항
- (6) 기타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⑥ 특별재심(안 제10조)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판사등 각종 재판관 추방 및 영장 등

⑦ 기념사업(안 제13조) :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안 제15조) :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장 내지 제7장(제69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4·19혁명 사망자" 또는 "4·19혁명 부상자"의 예에 따른다.

●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안

① 법안 명 :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

② 적용시기 : 1972년 10월 17일부터 1987년 6월 29일까지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 적용 기간 내에 비민주적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과 관련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

③ 적용대상 : 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당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고문등을 받아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자

2. 진상규명 법안(현재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음)

① 법안 명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안)

② 적용시기 : 1969년 8월 7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③ 적용대상 : 기간 내에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의문사하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의해 집계된 자의 사건

④ 대통령 직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특별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직무범위 : 1)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2) 고발, 영장청구 요청, 재정신청 여부의 결정 3)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⑥ 영장청구요청 :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건의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⑦ 사건처리 :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

고 관련자를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정보제공자의 보호 :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불이익 받을 우려 있는 경우 잠정구제조치와 보호 요청, 불이익을 행사하였다고 의심되는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음. 진상규명과 관련한 주요 정보 제공자에게 포상

⑨ 특례규정 :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 적용

· 새 천년의 정신적 지주를 열사정신으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사업회 (범추사) 건설에 대하여

1. 새 천년의 정신적 지주를 열사정신으로

올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이다. 크게는 천 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작게는 100년을 마무리하는 해이다. 그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왜곡되어진 최 현대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거짓은 거짓으로, 불의는 불의로써, 진실은 진실로서, 정의는 정의로서 자기 위치에 자리 잡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어둔 세력이 빛을 가리려 해도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는 것을 모두에게 확신 시켜야 만 한다. 지난 시기는 한 번도 역사의 진실과 정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 해서 모두에게 한과 불신만 팽배하게 안겨 준 세월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옹어리들을 새 천년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 이 모든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 내고 회개와 반성을 통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때만이 새 천년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명예회복, 진상규명은 단순한 과거의 청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래하는 미래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범추사는 이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축이다.

지난 세월은 외세와 독재, 자본의 폭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였다. 총칼과 모든 폭력 수단을 거머쥔 이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민중들은 맨 몸으로, 오로지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싸워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족민주인사들이 감옥에 끌려가야 했으며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의 폭압기관들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조직,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만 했으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다 마침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분신, 투신, 할복 등의 방식으로 바쳐야 했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앓아있던 시절의 참 인간의 전형인 열사들의 정신은 도래하는 새 천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만 한다. 열사정신은 나라와 겨레에 대한 사랑이며 인류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만 잘 살고 다수의 민중은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다. 도래하는 새 천년은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야 만이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상호간의 경쟁이 아닌 희망과 신념, 이웃으로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으며, 세계 인류와 호혜 평등의 관계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

범추사는 열사 정신이 새 천년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주축이다.

2. 범추사의 목적

민족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약칭 범추사)는 겨레와 나라를 위한 한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열사들의 아름다운 삶과 그 숭고한 죽음이 갖는 뜻을 지금까지 소수의 추모(기념)사업회들이 한정해서 추모해 왔던 것을 범국민적으로 확

대하여 각계 각층의 민족민주운동 단체들과 애국 시민들이 기리고 따라 열사들이 염원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바지한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 제정은 그 자체가 완성된 목표로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교두보를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에 불과하며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한 계단을 오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제정을 통해 열사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면 열사들의 죽음과 긴밀히 연관되었던 민족민주운동도 더불어 국가차원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효과를 가져와 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반면에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였던 온갖 세력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독재정권과 악덕기업주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잔인하게 자행한 살인 행위들을 낱알이 밝혀 내어, 악법 철폐와 폭압기관을 개편해 내는 결정적인 계기들을 마련해 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확장된 우리 운동의 정당성과 대중성으로 열사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세상을 더욱 빨리 이뤄 낼 수 있으며, 이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열사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범추사는 이렇게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 법 제정의 의미가 보수 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의해 또 다시 왜곡되거나 희석화 되는 것을 막아내고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민간 차원에서 확실한 주체가 되어 이를 운동적으로 강제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3. 이전의 범추사 건설 노력

문익환 목사님이 서거하시기 전인 1993년 각계 인사들과 가입을 원하는 애국시민들로 민족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하였으나 민족민주운동 세력들 내에 그 자각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고, 문목사님이 타계하신 이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 그 이후 범추사 건설은 추모단체 연대회의의 중요한 사업 목표로 나섰고 97년부터 새로이 추모위원 겸 발기인을 모집하여 왔다.

한편 범추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는 지난 8월 3일 전국연합, 민주노총, 한총련 등 33개 단체가 모여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범국민추진위원회(약칭,열사범추위)를 조직하여 범국민추모사업회 건설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설정하고 범추사 건설 준비 조직으로 자기 위상을 정하였으나 참여 단체의 자각성과 결집력 부족으로 열사범추위 차원에서 매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4. 현 시기에 있어서 범추사 건설의 필요성

범추사 건설의 당위성은 위 1항의 목적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위적 차원 외에 현시기에 범추사 건설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법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법 제정 3개월 이후부터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추사를 조속히 결성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조직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명예회복 법률이 제정되면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을 우선하여 민족민주인사로 추천 임명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항들 모두가 민족민주운동의 정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추모단체연대회의와 유가협에 의해 집계된 열사희생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서 기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5·18열사들에 대한 기념 사업 수준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 제정 이후 3개월 내에 제정 될 대통령령에 열사 묘역을 한데 모아 성역화 하는 문제나 국가기념일 제정, 열사의 거리, 민주화의 전당, 기념탑 건립, 교과서에 수록 등 추모 및 기념사업 내용 반영과 이 사업의 주체로서 범국민추모사업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과 같은 국가 공안기관과 숙명적인 대결을 갖게 되며 진상 규명의 성패는 여기에서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과정은 공안기관의 재판과 악법 철폐, 궁극적으로는 과거 정권과 보수세력 청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상규명위원회의 일거수 일투족은 태풍의 눈과 같이 정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의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설 것이고 여기에 범국민추모사업회에서 영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범추사의 사업 내용

- **명예회복사업** : 우선하여 가능한 많은 열사 희생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명예회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해 설치 될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선별 심사 할 가능성이 높다. 범추사에서는 법에 따른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요건을 갖추어 정한 다음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 이 명단을 일괄적으로 받아 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상규명사업** : 자체 내에 위원회를 두어 법률에 의해 설치될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진상 규명 작업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학술연구사업** : 우선하여 시행령이 올바로 제정되는데 주력하고, 민족민주운동 과정에서의 열사들의 정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이후 교과서 수록이나 역사 서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열사들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에 장애가 되는 악법 철폐, 폭압기구 개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 **추모기념사업** : 범국민추모를 비롯하여 추모 기념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일 제정, '열사의 전당' 설립, 묘역 성역화, 열사의 거리 선포, 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 한다.
- **유가족 숭양사업** : 향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위시한 대 국민 차원에서 진심 어린 숭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열사 발굴사업** : 자료가 부족한 열사들의 자료 발굴과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열사들의 행적을 발굴하여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기획사업** : 범추사 제반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 한다.
- **교육사업** : 각계각층에 열사, 의문사 민족민주운동, 범추사 사업 등에 대하여 교양.
- **문화사업** : 열사들의 아름다운 삶과 숭고한 죽음, 살아남은 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형상화하여 대중적으로 확산시킨다.
- **조직사업** : 1) 추모연대 회원단체 2) 노동조합 3) 계 단체 4) 총학생회 5) 일반 개인에 대한 조직.
- **홍보 및 출판사업** : 범추사의 각종 사업을 대국민 차원으로 홍보하고 열사 희생자와 민족민주운동 등에 대한 자료를 출판 한다.
- **국제연대사업** : 해외의 유사한 사례 및 단체와 교류하며 열사 희생자들을 전 인류의 귀감이 되는 인물로 부각시킨다.

다.

- **재정사업** : 재정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사업을 한다.
- **후생사업** : 미처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열사·희생자들의 유가족에 대한 장학 및 후생사업을 한다

6. 범추사 형태와 조직 체계

범추사의 조직 체계는 위 4항의 범추사 사업을 잘 이룰 수 있는 체계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원칙은 범추사 건설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추사 건설의 최고 목표가 열사들이 염원했던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이에 맞게 범추사 조직체계의 골간은 기층 대중운동 세력이 중심에 서서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각각의 사업에 따른 위원회, 대의원대회, 총회 체계를 갖도록 하며 지역별로 건설될 범추사 지부와 조직적 단일 체계를 갖는다.

7. 범추사 건설 일정

범추사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높은 자각성과 책임성을 갖고면서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갖춰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이 제정되면 우리의 준비도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는 자기 활동에 들어간다. 이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굴러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추사 건설 일정은 최소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기능인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 위원 대상과 각 사무처에 들어 갈 인사들에 대한 선정, 명예회복 대상자 요건 마련 등의 활동만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꾸려져야 하고 범추사 중앙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직해 내야 한다.

따라서 범추사 건설 일정은 명예회복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볼 때 6월경부터는 법이 발효되어 활동에 들어가므로 시행령 법안 준비는 즉시, 위원회와 사무처에 들어갈 인사 선정, 범추사 내의 명예회복 요건 마련은 3월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범추사 준비위원회도 3월 내에 발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범추사의 결성은 법이 발효되는 6월 경에는 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민족민주운동과 시기적인 계기성이 높은 6월 10일에 발족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범추사 결성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에 따라 결성하여야 만이 최소한의 것이라도 지켜 낼 수 있다.